



한국도로공사 대구지사



수신자 : 수신자 참조

(경유)

참 조 :

제 목 : 버스 과적단속 관련 업무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우리지사 관내 경주영업소에서 축중차로로 진입하여 과적에 단속되었으나 재검측 없이 통과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귀 연합회 또는 조합 운전자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위반차량 : 17대(붙임)

나. 장 소 : 경주영업소

다. 교육(홍보)내용

- 영업소 통과 시 일반하이패스 및 TCS차로 진입

- * 버스는 축중차로(적재량 측정차로) 통행의무 없음

- 축중차로 통과 시 10km/h이하 진입

- 알림벨 또는 운전자표시기 안내문구 확인 시 근무자의 안내에 따라 재검측 등 시행

라. 위반 시 행정처리

- 도로법 제77조 ④항 및 제115조 4호에 의거 경찰서 고발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7조제4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붙임 위반현황. 끝.

대 구 지 사



수신자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교통안전팀 주형석 교통안전팀장 ^{전결 07/05} 송상호

시행 대구지사 교통안전팀-754 (2022.07.05.) 접수 ()

우 38486 경북 경산시 낙산1길 11-6

/ <http://www.ex.co.kr>

전화 053-714-6360 전송 053-714-6398 / starjuhange@ex.co.kr / 공개